

『2005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』

《 檢 討 報 告 書 》

전문위원 김찬재입니다.

영등포청장이 제출한 2005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.

□ 제안이유

본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04년도에 취득하려했던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장후리 산40번지 소재 대한불교 천지경사 별립단 추모공원내 개인납골단 5,043기는, 진입로 문제·권리관계의 복잡 등으로 매입시설로는 타당치 않으므로 대안으로 충북 음성군 금왕읍 용계리 166-1번지에 소재한 용흥추모공원의 일부지분을 매입하기 위함입니다.

□ 제안내용

구분	소재지	구분			소유자	취득예정가 (시비)
		대지	건물	납골당		
종전	인천강화하점 장후산 40	7,203㎡ (2,179평)	3,485㎡ (1,054평)	5,043기	대한불교 천지경사	1,512,900천원
대안	충북 음성 금왕 용계 166-1	10,679㎡ (3,236평)	3,716㎡ (1,125평)	5,043기	최종숙	1,512,900천원

□ 검토의견

- 종전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 2000.1.12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면서 동법 제12조에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납골시설 설치 의무가 부여되었으며,
-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특별시립 납골시설이 안장됨에 따라 일반시민의 시립납골시설 사용을 전면 제한하고 있고, 2004년도에 지원된 납골시설의 건립비가 2005년도에 집행되지 않을 경우 지원된 예산의 회수는 물론 향후 지원도 축소될 우려가 있습니다.
- 따라서 제안된 납골시설의 지분확보를 하게 되면, 지원된 서울시 예산을 금년중에 사용하여 우리 구민들에게 장사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며,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.
- 제안된 납골시설의 위치는 우리구에서 약130km지점에 위치하여 승용차편으로 2-3시간 정도 소요되어 구민이 이용하기에는 적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- 제안된 납골시설의 권리관계를 살펴본바 토지건물 공히 4억4천5백만원의 가압류가 설정되었습니다. 따라서, 향후 분쟁의 발생에 대비하여 계약 체결시 소유자에게 가압류 해지를 요청함이 타당할 것이며, 강남구의 재산취득 및 설치사례를 참고하여 유사한 조건으로 성사되도록 사업추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.
- 덧붙인다면 앞으로 본 사업의 시행 시에는 유골의 안치기간, 안치기간이 경과된 유골의 처리문제 시설의 위탁운영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이 조례로 규정되어야 할 것임을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2005. 12. 5

보고자 : 김 찬 재